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

정동열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제의 제기2. 도서관 협력의 이론적 연구<ul style="list-style-type: none">2. 1 도서관 협력의 의의2. 2 도서관 협력의 역사2. 3 도서관 협력의 유형3.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현황과 협력 활동<ul style="list-style-type: none">3. 1 공공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3. 2 학교도서관3. 3 도서관 협력 활동 현황4. 외국의 도서관 협력 현황5.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 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5. 1 지역 단위 도서관별 협력 방안5. 2 전국 도서관 협력망 구축 방안6. 결론 및 제언 |
|--|---|



1. 문제의 제기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지식과 정보이다. 세계는 이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저장·유통·활용 능력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활동은 인간 지적자산의 보고인 도서관을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 도서관은 바로 인류의 지적산물을 수집·보존하고, 이를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 관리업무 내용이 가장 급속하게 변화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 고유의 역할은 변할 수 없지만, 도서관 외적인 지식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봉사에 대한 그 방법과 기법은 변할 수밖에 없다. 정보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별 도서관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도서관간 정보자원 공유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자원 공유의 기본적인 철학은 개별 도서관이 소장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자원을 타 도서관으로부터 상호대차 함으로써 도서관 봉사의 질적 향상을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도서관 상호협력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서관간 상호협력에 문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개별 도서관의 정보자료의 양, 전문인력, 상호이해, 행정적 제도나 재정적 지원 문제 등의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발전한 외국에서는 도서관 상호협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도서관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무현장과 학계에서 수십년 동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강국 구현으로 선진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서관이 바로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도서관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교육과 학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은 교수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정보센터로서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통제교육에서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도서관은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하여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 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 및 정보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의 주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일반 국민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시설이나 정보자료 및 인력이 매우 열악하여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도서관은 그나마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정보·교육·문화·평생학습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정보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력의 필요성과 이론적 연구, 국내외 도서관 협력 현황과 문제점, 도서관 협력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협력의 이론적 연구

2. 1 도서관 협력의 의의

최근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도서관 주변 환경의 급속한 발달로 개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웹을 통한 전자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더욱 전문화, 고도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봉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도서관 협력이란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종합목록의 작성, 공동목록, 공동수서, 서지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 등을 통해 도서관 자원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동으로 도서관과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간 협력 활동으로 정의된다(한국도서관협회 1994, 883). 즉 2개 이상의 도서관이 정보봉사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정보자원의 상호교환이나 공동활용으로 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Bauer(1995)는 도서관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협력을 위한 준비 정도, 공식적 합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계획(Planning)의 정도, 둘째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영향력 및 권력, 리더쉽과 프로그램의 수월성 등과 관련된 지도력(Leadership)의 정도, 셋째는 네트워크의 현황이나 자료공유 및 대외봉사와 관련된 협력(Cooperation)의 정도, 넷째로 각종 시설이나 이용자의 만족도와 관련된 지역의 적합성(Community Fi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위원회의 상황, 협력을 위한 자세와 업무에 대한 역할 등과 관련된 인적자원(Personnel)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 협력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다양한 내용의 정보자료를 여러 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자료를 개별 도서관이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타 도서관과 역할 분담으로 제한된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협력 활동을 통한 업무의 공유는 특정업무에 대한 사서의 업무 전문화(job specialization)는 물론 불필요한 잡무를 감소시킬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이용자 봉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자체의 업무 향상과 이용자

들의 인식 제고 등의 부수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

2. 2 도서관 협력의 역사

도서관 협력은 13세기 영국의 수도원도서관에서 문헌목록을 작성한 것이 시초이며, 그 후 1740년에 독일의 도서관간의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종합목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서관 협력을 위한 장서종합목록은 1896년에 미국도서관협회가 설립되면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1901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국가종합목록(National Union Catalog)을 발간하면서 서지정보와 소장처를 기술하였다. 1932년에는 미국의회도서관에 협동목록과를 설치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약 40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1942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된 Farmington Plan을 계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협력이 획기적으로 전진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회도서관에서 MARC 포맷을 개발하면서 도서관자동화, 상호협력 및 자료 교환에 새로운 변환기를 맞았으며, 1970년대 OCLC, WLN, RLG와 같은 온라인 서지서비스 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영국은 1930년에 현재의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상호대차 활동의 센터로서 국내 도서관간에 중복 자료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클리어링하우스의 기능과 모든 도서관의 협력 활동 지원과 종합목록 편찬을 담당하였다. 특히 문헌공급센터(BLDSC)를 설치하여 영국내외의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대출 및 복사요구에 응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지역적인 협력체제가 정비되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협력체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4, 884-5).

우리 나라 도서관 협력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196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 자료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계기로 초보적인 협력체제가 구성되었다. 그 당시에 나타난 도서관 협력체제로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1963년),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1965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1968년),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1972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1972년), 한국전문도서관협회(1979년) 등 주로 대학 및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까지는 실질적인 협력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개별 도서관의 전산화로 타 도서관과의 자원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도서관 협력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7년 경제위기로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의 상대적인 감소와 외국 학술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역단위 및 동종의 도서관간에 협동수서, 공동목록, 상호대차 등 실제적인 협력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설립되어 대학도서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등 여러 가지 협력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 3 도서관 협력의 유형

도서관 협력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킴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전통적인 도서관 협력 활동의 유형은 공동수서, 공공서지 작성, 자료의 공동 활용과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도서관간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도서관간 상호 연계를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도서관 협력 활동에 대한 유형으로 Evans(1995)는 4가지를 제시하였다. 타입 A는 두 곳의 도서관간에 자원공유나 상호대차를 위하여 상호 협약을 맺는 형태로 자료교환 모델(exchange model)의 의미가 매우 강하다. 타입 B는 타입 A를 확대하여 다수의 도서관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관리 모델(pooling model)로 초기의 많은 도서관 협력 활동 모델로 볼 수 있다. 타입 C는 다수의 도서관이 협약을 통하여 종합목록과 같이 공동으로 작성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형태이다. 모든 도서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지만 특정 한 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상호서비스 모델(dual service model)이다. 마지막으로 타입 D는 다수의 도서관이 하나의 시설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자의 정보자료를 입력·처리하는 형태이다. 즉 공동의 결과물보다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축된 시스템은 서비스센터(service center model)의 역할을 하게 된다.

Sewell과 Kent(1981) 역시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자료가 동등하게 분산되어 대등한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분산형, 중앙에 대형도서관이 위치하고 다수의 소규모 도서관이 연결되어 있는 집중형, 정보봉사 활동이 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보다 많은 정보량을 소장한 도서관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도서관의 수가 적어지는 계층형, 종적인 측면을 강조한 계층형에 횡적인 연계를 보완한 형태로 관종별, 지역별, 주제별로 구성이 가능한 혼합형이 있다.

도서관 협력 유형에 대한 다양한 이론연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서관 협력 모델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에 도서관 협력센터를 둔 완전집중형(star-type)으로 하나의 도서관이 충분한 자료와 제반 설비를 확보하여 각종 도서관의 정보요구에 응하며,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협력체제이다. 가장 이상적인 협력 형태이나 정보자료의 증가에 따른 전문화와 이용자 요구의 세분화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미국의 OCLC와 New York State Library가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도서관간의 여건상 상하의 관계로 협력체제를 이루는 계층형(tree-type)으로 도서관 정보봉사에서 업무처리 양상이 비슷한 도서관끼리 횡으로 하나의 계층을 이루며, 종으로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정보자료의 소장규모나 내용이 광범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지방의학도서관 프로그램(Regional Medical Library Program)이 4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이 이 유형에 속한다.

셋째, 개별 도서관과 도서관간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모두 연결하고 있는 분산형(mesh-type)은 도서관간에 직접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한 형태이다. 각 도서관이 주제별 특성을 달리한 일정량 이상의 정보자료를 보유하는 경우에 매우 이상적이다. 도서관 협력 체제가 비교적 소규모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연구도서관협의회(RLIN), 영국의 지역도서관 시스템 (Regional Library systems), 우리나라의 대덕의 연구단지 정보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다수의 대규모 도서관이 도서관협력센터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분담형(pie-type)은 지역적으로 분담수사를 추진했던 미국의 Farmington Pla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능분담형은 도서관간의 업무조정이 어려우며, 정보자료 수집에 중복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도서관 협력방식으로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현황과 협력 활동

3. 1 공공도서관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시·도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서관 업무가 1990년대 초에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소관부처의 이관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도서관 정책 일원화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 시설 및 자료

공공도서관은 1981년에 처음 100개를 넘어서 200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437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도서관수 증가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수가 늘어나다가 문화부가 출범한 1990년 이후부터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1). 이는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서관 확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확산으로 지역단위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해 온 교육청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소관부처별 공공도서관의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220개관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191개관으로 44%, 사립공공도서관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1개관당 서비스 인구가 약 11만명으로 미국의 2만 6천명, 일본의 4만 8천명 수

준과 비교하면 아직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도서관 1개관당 서비스 인구가 30만명에 육박하며, 전국 행정구역 3,512개(읍·면·동) 중 공공도서관이 설치된 행정구역은 409개(11.6%)에 불과하다(표 1 참조).

전국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2001년 12월 현재 26,946,477권으로 1관당 장서수는 약 6만여권에 해당한다. 이를 국민 1인당 장서수로 환산해 보면 0.56권으로 미국의 2.59권, 일본의 2.19권, 덴마크의 6권, OECD 국가들의 평균이 2.8권인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이처럼 장서량의 부족은 도서관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 도서관과 협력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게 된다.

표 1. 주요 국별 공공도서관 비교

국가	연도	인구수(명) (A)	도서관수(관) (B)	장서수(권) (C)	1인당장서수(권) (C/A)	1관당인구수(명) (A/B)
미국	1996	274,028,000	10,426	711,013,000	2.59	26,283
영국	1997	58,649,000	5,352	131,690,000	2.25	10,958
프랑스	1997	58,683,000	4,179	89,766,000	1.53	13,982
독일	1997	82,133,000	20,685	149,205,000	1.82	3,971
핀란드	1997	5,154,000	1,638	36,832,000	7.15	3,174
캐나다	1995	30,563,000	4,672	70,077,000	2.29	6,479
일본	1999	126,281,000	2,585	276,573,000	2.19	48,852
한국	2001	48,000,000	437	26,946,477	0.56	109,840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2001,『공공도서관요람』.

(2) 인력 및 예산

도서관 1관당 평균 직원수는 11.5명으로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FLA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적정 직원 수를 인구 2,500명당 1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는 19,000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 공공도서관 직원 수는 5,013명으로 국제 기준의 26.4%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직원수는 전문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IFLA에 따르면, 도서관 직원 중 전문직원의 구성 비율이 1/3정도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제기준 직원 수인 19,000명의 1/3은 6,333명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전문직원(사서직원) 수(1,847명)는 국제기준에 29.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표 2)에서와 같이, 전문직과 일반직의 적정 비율이 1/3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직원 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비교는 의미가 없어지고 또한 외국의 전문사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사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표 2. 공공도서관 소속기관별 직원구성 현황 (단위: 명)

직원 소속기관 \	행정직	사서직	기타	계	관당 평균직원수
시·도교육청	303	1,235	1,576	3,114	14.2
시·도	335	577	825	1,738	9.1
사립	41	36	84	161	6.2
계	676(13%)	1,847(37%)	2,485(50%)	5,013	11.5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2001.『공공도서관요람』.

내용을 비교해보면, 현재 36.8%라고 하는 전문직 비율은 그 의미가 더욱 퇴색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사서직에 대한 수적 부족은 국내의 법정기준에도 30% 미만이며, 전체 공공도서관 중에서 행정직, 사서직, 기타 직원을 포함하여 5명 미만인 도서관이 31.5%나 되며, 5명~10명 미만이 도서관이 34.7%로 2/3 정도가 10명 미만으로 전문봉사는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이 곤란한 상태이다.

공공도서관 예산 분야에서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구성된다. 1관당 연 평균 예산은 2001년 현재 5억 30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50%, 기타 운영비가 38%를 차지함으로써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료구입비의 비중이 12%에 그치고 있어 신간도서구입 부족에 따른 공공도서관서비스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공공도서관 2001년 운영예산 (단위: 천원)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계	관당 평균예산
116,077,975 (50%)	28,189,149 (12%)	87,279,614 (38%)	231,365,168 (100%)	529,440

(3)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 문제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공공도서관들이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공공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이 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높다. 1998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조조정과 평생학습 진흥을 이유로 4개 도서관 및 1개 분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에도 강원교육청이 5개 도서관을 평생교육정보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울특별시 일부 구청이나 경기도 성남시 등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신규 개관하면서 그 명칭을 도서관이 아닌 정보문화센터 등으로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명칭변경 방식과 달리 아예 도서관을 폐관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999년말 이리공공도서관을 폐관하고 그 장서와 직원 등을 신규 개관하는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시립도서관을 학생회관과 통합시켜 2001년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공공도서관 명칭을 변경한 도서관은 25개관에 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정보화의 주역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전적으로 상반되며, 국가 차원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도서관 명칭의 변경은 도서관 지원의 기준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서관관련 지원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문화기반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도서관 분야에 명칭이 변경된 시설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도서관 정책에서 이러한 시설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등이 그러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지원 정책이 도서관만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할 경우,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는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2 학교도서관

(1) 시설 및 자료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1~2개 학급 규모의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4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강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78.7%에 불과하다(표 4 참조). 이는 미국 96%, 영국 98%, 일본 99%(2000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의 규모는 대체로 교실 1칸 정도로 이루어진 1실 도서관이 대부분이며, 학생 1인당 열람석은 0.07석으로 약 14명당 1석 정도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이용 형태는 도서실 정보 자료의 이용과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습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설 규모로는 서가, 열람대 그리고 컴퓨터 및 컴퓨터 테이블을 배치하고 나면 공간이 협소하여 도서관의 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정보 자료를 이용한 집단별 학습이나, 학생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 자료의 경우도 수준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표 4)에서와 같이 학교도서관(실) 1관(실)당 장서 수는 5,015권, 학생1인당 장서 수는 5.1권에 그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학생1인당 장서 수가 20권(초등학교)~26.8권(고등학교)이며, 미국의 경우 88.1권(초등학교)~150.4권(고



등학교)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자료의 현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도서관의 장서도 단행본 위주에서 연속간행물이나 CD-ROM과 같은 전자자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도서관은 연속간행물이나 비도서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학교도서관이 지식정보의 핵심시설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학습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 4. 학교도서관 및 장서 현황

구 분	학교수 (A)	학생수 (B)	도서관수 (C)	장서수 (D)	도서관설치율 (A/C)	1관당 장서수(D/C)	학생1인당 장서수(D/B)
초등학교	5,322	4,089,429	3,663	18,355,837	68.8%	5,011	4.4
중 학 교	2,770	1,831,152	2,380	9,942,602	85.9%	4,177	5.4
고등학교	1,969	1,911,173	1,875	11,416,446	95.2%	6,088	5.9
계	10,061	7,831,754	7,918	39,714,885	78.7%	5,015	5.1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1

(2) 인력 및 예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직원(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를 두도록 되어 있다(표 5 참조).

표 5.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학교	1. 초등학교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 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 교사(사서) 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 사 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도서관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 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그러나 실제 사서교사 배치는 매우 저조하여 전문적인 교사나 직원에 의한 운영과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담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 사서교사의 경우는 2001년 현재 139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1).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1.38%로 전무에 가깝고,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7,918개 학교의 1.75%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학교도서관의 경우 초등학교는 사서교사 2.2명, 중등학교 2.7명인 것에 비하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의 경우 임용초기부터 사서교사로 임용된 사례 외에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받아 사서교사로 재임용된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전담 사서교사도 업무과증 및 비사서직 배치로 학교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예산의 경우, 예산 규모는 조금씩 증가해오고 있으나 도서관 1관당 예산이 332만원 수준이고 학생 1인당 예산액도 3,363원으로 미국의 학생 1인당 36,900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표 6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면 학교 운영비의 3~5%를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하는 학교도서관은 거의 없다.

표 6. 학교도서관 예산 현황

구분	학교수 (A)	도서관수 (B)	예산액(천원)			학교당 예산 (C/A)(천원)	도서관당 예산 (C/B)(천원)	학생1인당 예산액(원)
			계(C)	도서관	도서실			
초등학교	5,322	3,663	14,580,695	170,026	14,410,669	2,740	3,981	3,565
중학교	2,770	2,380	5,988,741	117,164	5,871,577	2,162	2,516	3,270
고등학교	1,969	1,875	5,996,253	934,603	4,841,650	2,934	3,081	3,022
계	10,061	7,918	26,345,689	1,221,793	25,123,896	2,619	3,327	3,363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1.

3. 3 도서관 협력 활동 현황

우리 나라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 활동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정보제공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아직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신착도서자료 목록을 배부하거나 방학중에 독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도서관 협력 활동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2003년부터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다른 관종의 도서관을 협력망에 포함시키는 되어 있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993년부터 1년 4개월간 인천광역시의 효성서초등학교와 인천 북구도서관간의 협력이 대표적인 예이다(김지현 2000). 이들 두 도서관은 독서활동의 생활화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교도서실과 운영여건이 나은 공공도서관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협력활동을 시작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지역 공공도서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양 도서관간의 실천 의지가 미약한 점과 열악한 환경, 교사와 사서들의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종결되었다.

4. 외국의 도서관 협력 현황

선진 외국의 도서관 협력 활동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42년 의회도서관과 농학도서관 그리고 50여개의 도서관 협력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Farmington Plan과 그 후속연계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관하는 ‘수서와 편목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PAC : 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 and Cataloging)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07년 ‘도서관법’(Library Act)이 제정되어 상호협력체제를 제도화하였다. 미국의 협력체제의 형태는, 각 주정부 주도 아래 도서관 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었는데, 그 한 유형은 여러 관종의 도서관을 지역별로 묶어서 지역 자치적인 협력망을 구성하는 다관종(multi-type) 협력체제이고, 다른 한 유형은, 동일한 관종을 지역별로 묶어 여러 종류의 협력망을 구성하면서 주도서관이 협력망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단일 관종 협력체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도서관들은 하나의 협력망에 단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협력망에 가입되어 다양한 종류와 다단계의 자원공유를 이루고 있다.

영국은 1916년 상호대차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착시킨 이후 1931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전역에 중앙대출도서관제도를 통한 상호대차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어서 국립과학기술문화대출도서관(NLIST)과 영국국립도서관 문헌종합센터 등의 설립 및 기능강화를 도모하여 국제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켰다. 영국의 협력체제의 형태는, 하나의 대출도서관을 정점으로 삼아 피라밋 형 전국협력조직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미국과는 달리 협력체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서관의 합의나 권리 등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여러 나라의 협력체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정에 의한 복수도서관의 협동작업이 아니다. 협력체제를 확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도서관의 합의나 참가를 권유하기에 앞서 자료이용의 편의와 수혜를 강조하여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영국의 도서관 협력체제가 가지는 장점인 것이다.

국가를 막론하고 도서관 협력 활동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전체에 평등한 정보 접근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 활동은 국가 차원의 도서관 전반적인 협력 활동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독서 및 문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상호협력이 장려되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봉사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개척할 당시부터 교육을 국가정책에 최우선시하는 사회적인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평하고 있다. 19세기 말에는 공공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Children's Room)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41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교육협회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봉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동봉사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School and Public Libraries Working together in School Library Service'를 발표하였다. 그 후 1956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기준에 학교도서관과의 협동체제를 권고하였으며, 1961년에는 문부성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역설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한 사례로 1980년대 후반에 시카고 공공도서관, 시카고 교육청, 일리노이 주립도서관 삼자가 협력을 체결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LLINET'을 구축하여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에 평등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Library of California라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 전체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협력체제를 다중 관종 도서관 협력망(multi-type library network)으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Library of California 2002)

유럽 지역 역시 학교도서관보다는 공공도서관이 훨씬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및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덴마크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동일한 법에 의해 관장되며, 동일한 부처(문화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다. 동시에 지방의회에서 같은 위원회에 속해 있어 양기관의 협력이 훨씬 용이한 환경이다. 공공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모든 형태의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협력은 수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도서관의 수서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료 선정시 가능한 조정을 통해 동일 지역내의 학교도서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 자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협력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쿄도 치바현 이치가와시(東京都 千葉縣 市川市)의 중앙도서관이 1994년에 개관되면서 학교도서관과 협력 활동이 본격화되었다(김지현 2000). 1996년 문부성으로부터 학교도서관정보화 활성화 추진 모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98년에 이치가와시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시내 54개교의 학교도서관을 하나의 도서관으로 연결하여 학교도서관 자료의 상호활용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결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학교도서관간에는 사서들이 인터넷을 통한 장서검색 및 서지검색으로 다른 도서관 자료의 요청과 호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인 지역중앙도서관이나 지역분관의 협력은 주로 학교도서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검색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으로 상호대출은 택배운송회사에서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도서배송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자료를 분담하여 수서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아동사서가 학교를 방문하여 독서활동을 돋우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사서는 학교독서교육이나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해 주는 역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자료 및 시설을 개방하여 도서관 봉사를 하고 있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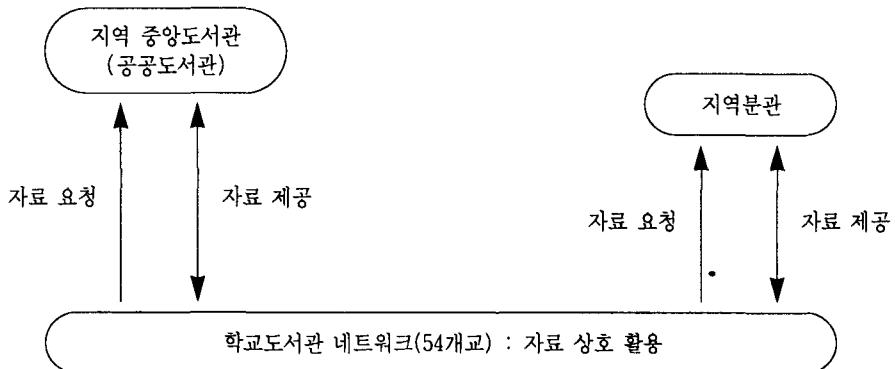


그림 1. 이치가와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연계 활동 개요

자료: 김지현. 2000.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 23-24.

5.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 방안

우리 나라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 활동은 아주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 할 것 같다. 교과서 중심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센터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7년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의 추진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면서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환경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면서 자기학습이 가능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시간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행한 것은 최근 몇 년간 도서관 발전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와 정부의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2년 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4월 3일에는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이 대통령께 보고되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추진 계획이 시달되었다. 2002년도 6월에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 (2003~2011)’이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상정되어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었다. 그 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보고되었다. 도서관 발전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관심을 모은 것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안이다. 특히 두 관종간의 협력과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은 매우 고무적이다.

5. 1 지역 단위 도서관별 협력 방안

우리 나라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1년말 현재 공공도서관은 437개관으로 그 중 220개관(50%) 시·도교육청이 운영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활동을 구축할 경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초·중등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0)과 한운옥(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상설협의기구를 행정기구 안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측 도서관간의 상호 협력원칙이나 대상 및 방법을 명시한 협력서를 작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협력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지속적인 협력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근거로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주요분야는 학교도서관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및 이용교육,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실질적 지원과 협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팀)’을 보강하거나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운영지원담당,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자 교육이나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이용자교육을 추진할 교육담당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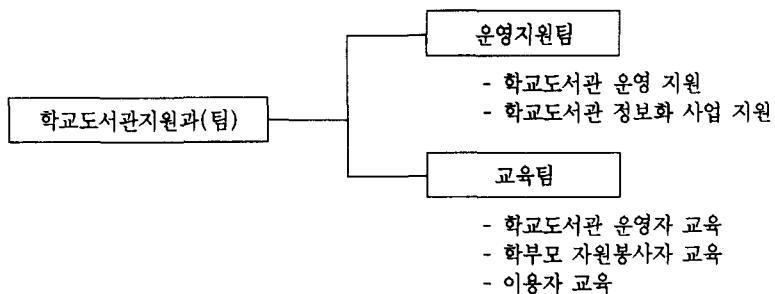


그림 2.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조직 구성도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지식정보시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개발』. 103.



충청남도교육청(2000)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유형은 <그림 3>와 같다. 두 도서관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정보자료나 장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공유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협력의 영역이나 방법은 해당 도서관간 협의 하에 각 도서관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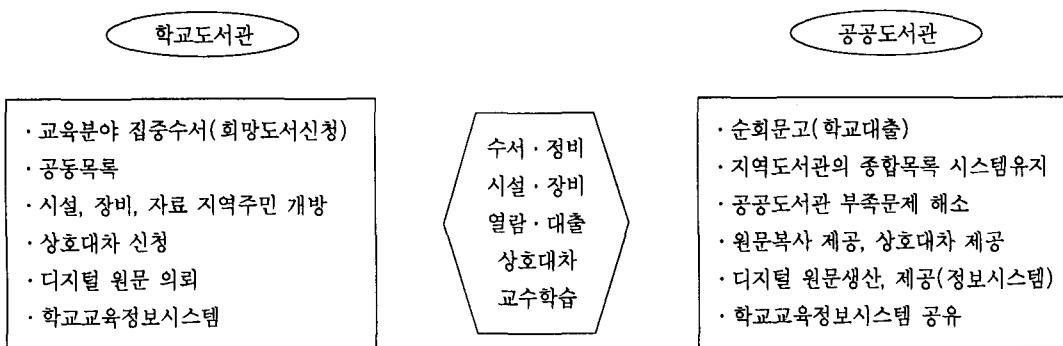


그림 3.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협력 유형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2000.『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성 및 미디어센터 모형개발』. 215.

(그림 2)와 (그림 3)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의 단위 도서관별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일대일로 협력체계 구축시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과 협력 분야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인력(사서)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완이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며, 교과교사의 사서교사 재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한 부분적인 활성화를 시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정보시스템을 협력한다면,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자료를 중심으로 수집·제공하고, 학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협력망을 통해 상호대차 혹은 원문복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적,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협력 단위 도서관간에 자료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상호대차, 구입 희망도서 신청 기능 등을 갖춘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셋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원문정보를 공공도서관에 요청하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요청한 정보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종합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에서는 분답목록이 가능하고, 공공도서관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유효봉사반경이 도보로 10~20분 거리인 점을 감안 할 때,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검색과 상호대차 혹은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아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시설과 공간을 학부모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개방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종합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하고, 가까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컴퓨터 및 각종 정보기기를 개방하여 주민들의 정보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로 충분하다. 이미 2001년에 시·도교육청별로 6개교씩 96개교의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되었고, 2002년에 215개교가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01년 7월에 도서관간에 호환이 가능한 표준화된 '공동목록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를 통한 협력 활동은 이미 선진 외국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지원팀'과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17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원팀은 개별 학교도서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각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지원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으로까지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부차적인 협력 활동으로 도서의 기증이나 공공도서관 목록정보 공유, 독서의 주간 행사 등 독서관련 사업을 지역 내 공공 및 학교도서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바람직한 활동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성공적인 협력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과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협력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의 관리자와 학교 관계자, 도서관 사서 및 직원, 이용자 모두의 협력에 대한 인식과 폭 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훌륭한 계획, 철저한 사전 사후 평가, 도서관간의 확실한 역할의 구분, 기술적인 면, 재정상의 문제, 커뮤니케이션, 지도력, 태도,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성공적인 협력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예산 부족, 자료 및 인력 부족, 시간, 시설 및 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지도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도 들 수 있다.



5. 2 전국 도서관 협력망 구축 방안

지역의 단위 도서관별로 협력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도서관 협력망의 확대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협력망 구축을 통한 관종별, 지역별 도서관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시·군·구별로 1~2개정도 설치되어 개별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공공도서관을 지역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일정한 지역의 도서관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전역(全域)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6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국적 도서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앙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16개 시·도에 지역대표관을 각 1개관씩 지정하고, 지역대표관 아래에 개별 단위도서관인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결되는 '전국 도서관 협력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4 참조). 이러한 도서관 협력망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동목록 구축, 서지정보 표준화, 디지털 참고봉사 서비스 등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대표관의 역할은 단위 도서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컨소시움 구성을 통한 공동 수서 등을 지원하며, 단위도서관은 동일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목록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문고 등 서비스 거점과의 연계망 구축, 공동목록, 상호대차, 컨소시움 구성을 통한 공동 수서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과 동시에 전국의 학교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도서관 실정으로 볼 때, 이상적인 전국적인 도서관협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서·인력·서비스·예산 등 거의 모든 기반조건이 미비하며, 도서관 협력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기반과 행정·사회적 인식 역시 미비하다.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처가 교육청과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서관 정보화사업이나 도서관 협력망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놓여있다. 이 외에도 도서관 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나 규정이 미비하며, 실제 이용자들의 도서관 협력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그림 4)에서 제시된 전국 도서관 협력망 구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중인 시범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및 단위도서관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협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행정, 인력, 재정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단위도서관은 지역 협력 활동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이다. 관련 사례로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문고 등을 연계하여 공동 대출 및 반납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 도서관 협력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

■■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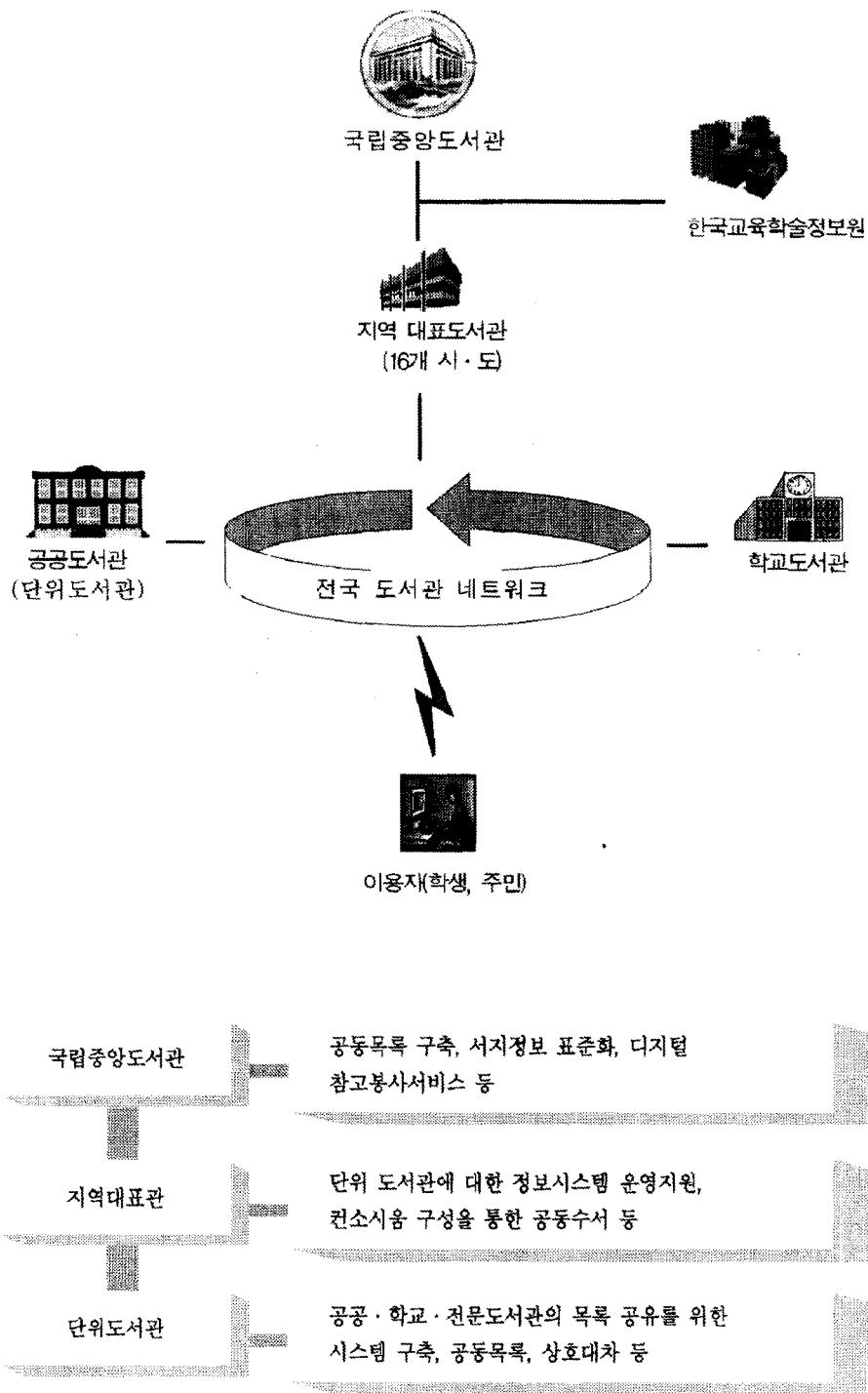


그림 4. 전국 도서관 협력망 구성도

과 같다.

첫째, 전국 도서관 협력망 구성은 자율방임형 협력망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협력망을 기초로 하여 중앙집중식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 협력 체제임으로 협력체제 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 시킬 수 있다. 그런데 관종별 도서관의 운영체제를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소관부처가 교육청과 시·군 지방자치 단체로 그 운영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협력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립과 사립대학 도서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문 및 특수도서관도 다양한 모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운영체제의 구조적 다양성은 협력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선 공공도서관은, 가능한 지역(광역자치단체 등)부터 소관부처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외 타관종도 협력사업의 통합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국가 도서관 협력의 기본 정신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도서관 협력망 구성과 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상정 적이고, 개략적인 장치만으로는 현실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위한 재원)과 지원책이 중앙정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하며 소관부처가 다르고 모체기관이 다르고 지역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보자료의 공유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도서관봉사가 공평하게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한다.

둘째, 정책부서와 총괄기관의 기능분담 등 관계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여야 한다(표 7 참조). 전국 도서관 협력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에 협력체제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부서인 문화관광부는 기본정책의 개발 및 기획업무와 타 부처와의 협력조정문제를 관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협력체제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명시된 도서관 관련 정책 및 중장기 계획수립의 일환으로 협력체제의 기본정책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와 조율을 필요로 하고, 공공도서관과 지방사서직의 정원 및 배치 등에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문특수도서관이나 도서관정보화 등의 문제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의 협조와 조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도서관정책 담당부처와 협력체제의 운영과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조율을 이끌어 내야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협력체제의 운영의 최상위기관으로서의 위치와 기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표 7. 관계부처 역할 분담

관련부처	역 할
문화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추진, 총괄• 공공도서관의 각종 지원정책 추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 도서관 협력망 및 정보화 추진•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 운영 등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대학도서관 활성화 대책 주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충• 학교·대학도서관 정보화 추진• 교육과정과 독서진흥의 연계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 및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예산확보 지원• 공립문고의 공공도서관 분관 전환•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일원화 지원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지원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이용료 부담 경감 등)• 상호대차 활성화를 위한 우체국의 지원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계획의 합리성 검토 및 예산지원•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설치 검토

셋째, 협력체제의 기반조성이다. 협력체제의 성공적 운영은 상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발성과 존중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도서관이 도서관 협력체제를 통하여 자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활용·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 1) 협력망 중심도서관의 인적·물적 손실을 보존해 주는 예산지원과 인적지원책이 분명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 2) 협력망의 중앙관인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중심관으로 한 전국규모의 도서관 정보화 네트워크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KERIS, 국회도서관, 기타 협력시스템 등과의 네트워크를 연계 운영해야 한다.
- 3)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호대차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대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도서관들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현행 납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납본제도를 일원화체제로 전환하되 국가가 지정하는 관종별 지역센터 도서관에도 필요할 경우 납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작권과 등록권을 연계하여 납본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며, 납본 보상금을 현실화시키거나, 국가문헌 보존차원에서 완전무료화로 한다.



- 5) 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의 면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도서관 등에서 복제의 경우 저작권법(제 26조 1항 및 제 28조 제 2항, 3항)에 의하여 복제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관점에서 적극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자료의 유통이 보다 확대되고 자유스러워야 함으로 도서관에 한해서 저작권의 면책범위가 당연히 개방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자료의 공유화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6) 국립중앙도서관이 수립한 도서관 협력망 운영계획을 국가 도서관 협력체제의 협력망 운영계획으로 확대하고, 조속히 구체화된 계획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울러 협력사업운영에 필요한 표준화, 종합목록의 작성 등 기반사업을 조속히 보완, 추진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력의 필요성과 이론적 연구, 국내외 도서관 협력 현황과 문제점, 도서관 협력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도서관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과 도서관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도서관 협력 및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제반 여건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도서관 관련 정부 부처간의 연계 부족과 정보화에 대한 통합관리체제가 결여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전담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며, 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와 시·도교육청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부처별로 독립적인 관리체제 하에 부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활용상에 한계가 있어 범부처적인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도서관 정보인프라 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 도서관 정보화 기초능력과 하드웨어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서비스의 기업화·전문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컨텐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및 통합화를 통한 검색능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도서관 정보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낙후되어 지식기반사회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식의 창출, 유통, 거래 등에 관련된 법·제도가 여전히 과거의 공급자 중심,

규제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존속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열과 지식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 정보화 관련 행·재정지원 체제가 미흡하다. 도서관과 같이 비영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지원 체제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제의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동시에 단일부처의 정책을 탈피하여 범부처적 협조와 종합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사업의 중복·낭비 요인 제거 및 효율성 확보가 요청된다. 중앙정부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역단위의 민간·공공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재원의 조달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교육·연구·평생교육에 관한 개별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협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취업에 관한 정보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며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세계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 조성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이 조성되고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교육의 황폐화로 전 국민이 교육혼란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조리와 향락문화가 번창하는 등 말초적이고 원색적인 우리의 문화구조를 탓하기 앞서 도서관과 같은 교육문화시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가를 먼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이 학교나 그 지역, 그리고 국가의 정보보고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21세기 지식강국 대열에서 밀려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찬란한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퇴색되어 빛을 잃고 말 것이다. 도서관이 그 고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에 새로운 사회발전이나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화의 번성이 있을 수 없으며, 참다운 민주정치가 싹틀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육중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다운 지식이 올바르게 형성된 사회에서 똑바로 굴러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임을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2000.『2000년 학교도서관 정보화 현황보고』.

교육인적자원부. 2001.『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2001.『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1-21.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2001『교육정보화 백서』.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2001. 6. 29.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과제 9.
- 국립중앙도서관. 2001.『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병주. 1997.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도서관학논집』, 27: 13-14.
- 김지현. 2000.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제38회『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23-24.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문화관광부. 2001.『2001年度 讀書振興에 關한 年次報告書』.
- 이미화 편역. 2000.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협력: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시민과 도서관』, 1(2): 76-79.
- 충청남도교육청. 2000.『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성 및 미디어센터 모형개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과제.
- 정동열. 2000. 멀티미디어 학교도서관 구축방안 고찰.『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93-109.
- 한국교육개발원. 2001.『교육통계편람』.
- 한국교육개발원. 2001.『전국 학교도서관 조사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지식정보시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개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도서관협회. 1994.『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1.『한국도서관통계』.
- 한윤옥. 2000. 21세기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41-62.
- Bauer, Patricia T. 1995. "Factors Affecting the Operation of a Combined School/Public Library: A Qualitative Study," (Ph.D. diss., Florida State Univ., 1995)
- Evans, G. E. 199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3rd ed.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 Haworth, N. 2001.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knowledge economy",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Korea Press Center, Aug. 29, 2001, Korea.
- Library of California. [cited 2002.9.2] <<http://www.library.ca.gov/loc/index.html>>.
- Sewell, P. H. & A. Kent. 1981. Resource Shar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library

-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Andre deutsch.
- William, B. V. & P. Owens. 1986. "School and Public Library Cooperation: A Prerequisite for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Development* 7: 183-195.



토 론

이 제 흰(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사이의 협력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당위의 과제이다. 굳이 정보자원의 폭증이나 도서관의 빈약한 재정 그리고 비용효과의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서관 사람으면 누구나 동종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며, 특히, 우리의 도서관 현장과 문화에 적합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지를 모아 찾아내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너무도 열악하다.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아직 ‘근대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천민자본주의적 의식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학교도서관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조차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사회적 공감대는커녕, 대부분의 학교운영자들에게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시설의 낭비요 사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이 필수처럼 되어버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교수의 발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우리의 척박한 도서관문화와 일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설정을 고려할 때, 정교수의 논리 전개는 다소 현실감을 결여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이 ‘모범’ 방안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것’이 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이국적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관종을 불문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일선 도서관들인데, 누가 누구를 돋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교수의 논문을 접하면서 내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이다.

물론 정교수 이야기대로 ‘협력’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열을 주더라도 하나를 받을 수 있으면 그 관계는 분명히 협력 관계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협력은 조금 유식하게 말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인적 물적 자원의 교환 혹은 공유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협력 관계’가 성공적으로 성립되려면 협력 주체들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교환 혹은 공유할 인적 물적 자원의 수준이 대등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때, 그 관계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지원 관계 혹은 의존 관계가 되며, 따라서 ‘관계’의 성격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데 있다.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면, 그에 따르는 방안도 바뀌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도서관 현실에서 공공도

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상호보완적 상태에 있지도 않으며, 더군다나 대등한 상태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 공공도서관이 (만약 의지가 있다면) 이제 막 발아를 시작한 학교도서관의 생육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서 정교수의 논의는 두 기관의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도서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 찾기’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정교수는 ‘협력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도서관선진국에서 관련 사례와 모델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연히 그가 제시하는 협력 방안은 그들의 방안이며, 우리의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제언으로 다가온다.

정교수는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는 ‘도서관’이라는 두 기관의 동질성에 집착하는 반면, ‘공공’과 ‘학교’라는 母體의 이질성을 가벼이 넘기고 있다. 그러나 보니 ‘관계 설정’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비록 고객의 일부를 공유할지는 모르지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조직 기반과 성격 그리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관계 설정’을 가로막는 조직적 한계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파악과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정교수의 논의에는 이러한 한계와 요인에 대한 토론이 매우 빈약하며, 우리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토착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다. 대신에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주장들과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공공도서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의문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정교수는 (김지현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인천에서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조시도가 실패로 끝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도서관들의 열악한 환경, 실천 의지의 미약, 교사와 사서들의 무관심,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는 정교수 논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시도된 협력 사례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특히, 실패로 끝난 원인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토착적인 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했다.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나, 정교수는 이 부분을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가벼이 넘기고 있다.

한편, 논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정교수의 시각은 매우 거시적이다. 그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을 국가 차원의 전국적인 도서관 협력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자 한다. 당연히 논의의 비중을 일선 도서관 현장의 실무 방안보다는 국가 차원의 도서관 정책의 제시에 두고 있다. 그러나 보니, 지면의 많은 부분이 너무도 ‘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논문의 목적을 혼동하게 만



들 정도로 글의 내용과 논지가 무게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일선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들이 참조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질적인 방안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관계 모색은 중앙기관에 의한 제도적 통제와 간섭보다는 풀뿌리 차원의 의식개혁과 실행의지가 밀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일부일지라도 개별 도서관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시도를 통해 개선 방안이 경험적으로 누적되고, 그리고 난 후에 지역 혹은 국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노력의 중복이 예상되더라도 말이다. 협력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는 법이나 제도보다는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상호의존적’ 혹은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는 도서관선진국의 다양한 협력 사례에 대한 소개가 아니다.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이다. 다시 말해, 이들 도서관 사이의 협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며, 협력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흔히 봉착하는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와, 그러한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제시된 (그래서 일선에 있는 현장 사람들에게 생생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착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정책연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토착적인 기초연구가 먼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운영자들의 의식 조사,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 조사,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사서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 등, 폭넓은 기초 연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력 대상인 공공도서관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어떠한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공도서관 정책입안자, 경영자, 그리고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파악해 내야한다. 위에서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협력(지원) 의지와 협력(지원)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협력(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선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토착적인 기초 연구가 폭넓게 수행된 이후에 이루어져도 결코 늦지 않다.

토 론

우 병 현(동대문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팀장)

1.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을 교과서에 모두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교육은 인쇄자료, 영상자료,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문과 기술을 교사가 다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가르치는 교육은 소비자 중심의 배우는 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보와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짧아져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심 교육과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력 계발과 정보 활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인쇄자료, 영상자료, 컴퓨터자료와 정보 통신 장비를 갖춘 학교도서관의 설치가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2. 학교도서관 현황

구 분	초	중	고	전체
학교수	5,382학교	2,801학교	1,989학교	10,172학교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	70.9%	90.5%	91.9%	80.4%
학교도서관의 평균 면적	68.3m ²	106.9m ²	207.3m ²	107.1m ²
학교도서관당 소장 책수	5,216권	4,195권	6,437권	5,190권
학생1인당 소장책수	4.8권	5.8권	6.6권	5.5권
DB 구축 비율	57%	56%	56%	57%
학교도서관당 연속간행물	6.9종	9.9종	9.4종	8.5종
학교도서관당 비디오수	40.3종	30.1종	37.9종	37.1종
학교도서관당 전자매체수	23.2종	18.7종	20.2종	21.3종
학교도서관당 전자책수	13.5종	5.8종	4.1종	9.1종



구 분	초	중	고	전체
2001년 증가 책수	933.7권	460.7권	475.4권	686.8권
학교도서관 예산	4,346천원	4,033천원	5,557천원	4,497천원
학생1인당 학교도서관 예산	5.7천원	6.2천원	6.2천원	5.9천원
사서교사수(미발령 교사 포함)	19명	17명	113(117)명	149(154)명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직원 총수	502명	193명	182명	880명
자원봉사자 이용학교 도서관수	41.6%	6.7%	4.3%	22.6%
서버를 보유한 학교도서관수	50.6%	62.2%	43.5%	52.8%
학교도서관당 PC수	3.1대	2.3대	3.3대	2.9대
대출자수 비율(1일평균)	5%	4%	3%	4%
학생1인당 대출책수(1일평균)	0.07권	0.05권	0.05권	0.06권
학교도서관 이용자수 비율	9%	7%	6%	8%
학교도서관 이용수업학교수	65.1%	44.9%	31.1%	51.3%
학교도서관 운영시간	4.2시간	2.7시간	3.6시간	3.6시간

3. 학교도서관의 제도적 문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사안이다. 그만큼 제도적인 문제가 현 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제도적 문제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법규의 문제이다. 학교도서관 설치와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법규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규정하는 실제적인 기준들이 제정 공포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와 사서교사 배치, 그리고 시설·자료 기준 등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과 그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가 미온적이며 불합리하여 실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의 공허함과 산만성은 학교도서관을 반세기동안 제도 부재 속에 자습실로 전락하여 유명무실하게 파행적인 운영을 해온 것이다.

특히 관련 법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 소관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교육 영역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행정 당국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법규만을 준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학교도서관 관련 법규는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계와 도서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을 상대로 성실한 견의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문제에 있어 다른 한 가지는 장학체계의 문제이다. 사실은 이 장학체계 문제가 법규의 문제보다 더 현실적인 사항이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 당국의 의지와 실천력은 법령의 규

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초월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 면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의지는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 당국의 장학 활동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는 지방 교육행정 당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교육행정 당국 내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중앙 교육행정 당국이나 지방 교육행정 당국의 경우 학교도서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그 일을 담당하는 장학관도 없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행정 당국에서 학교 현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학교도서관 장학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장학 활동의 혜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시행시 지원 기관(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문제

2003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예산 600억원 중 6% 내외 약 36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며 2002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약 430여명을 10개월 간 사용 가능함. 이로 인한 지방의 경우 전문인력(자격소지자) 확보에 문제발생 우려가 있음.

• 일용직 직원의 집단행동 문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계약직 사서직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서교사 확보 및 사기 진작 문제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149명 그중 98명이 서울시에 배치되어 있고 경상북도가 23명, 전남 9명, 부산 8명이며 타 시·도는 미 배치나 다름없다.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됨에 의해 일반 교과교사 부족 수 약 23,000명을 2004년까지 연차적 총원에 따라 그 이후에나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할 형편임. 또 사서교사도 타 교과교사와 같이 1·2급정교사로 자격을 구분하고 부장,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대도시 이외의 경우 지원 도서관과 학교의 거리 문제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 지원 도서관과 학교와 거리 문제 기타 제반 여건의 미흡으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